

	정보화관리 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9		
		제정일	2012. 11. 08.		
		개정일	2017. 06. 20.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사무처 전산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정보화 및 정보 보안 위한 제반 기획,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심의·조정을 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화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조정한다.

1. 중·단기 정보화 및 인프라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
2. 학내 정보화 인프라 선정,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정보화 사업 제안내용 타당성 검토
4.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 관련사항
5. 사이버 침해 관련사항
6. 기타 위의 기능과 부수되는 사항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장)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, 위원장 유고나 결위시에는 전산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보직 변경시에는 후임자가 자동승계한다.

제6조(임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간사는 전산팀장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.

제8조(회의의 소집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위원장의 유고나 결위시는 전산팀장이 소집한다.

제9조(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	정보화관리 운영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29		
		제정일	2012. 11. 08.		
		개정일	2017. 06. 20.		
		페이지	2/2	관리 부서	사무처 전산팀

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전자메일이나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(회의록) 위원장은 모든 출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